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211
----------	------

2022년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2. 5.25.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2. 5.27.

4. 상정일자 :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2. 6. 17.)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 의안번호 제3211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금액이 240억 2천 4백만 원에서 390억 8천 8백만 원으로, 당초 대비 150억 6천 4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 '녹지생태도심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마련' 사업 신규추진을 위해 정책사업비를
당초 20억 5천만 원에서 26.8% 규모인 5억 5천만 원 증가한 26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 이상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결과, '예치금'이 당초 304억 3천 8백만 원에서 449억 5천 2백만 원으로 145억 1천 4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3211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2.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상 예치금회수 금액이 당초 24,024백만원에서 39,088백만원으로 15,064백만원 증가하였음.
- 나.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신규사업 편성을 위해 사업비(정책사업)를 550백만원 증액하고, 여유자금 예치(재무활동)를 14,514백만원 증액하여,
- 다. 정책사업 2,600백만원, 재무활동 44,952백만원으로 각각 당초 편성 대비 20% 초과 변경하고자 함.

라. 수입·지출계획 변경 내용

〈수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편성 시)	변 경 (안)	증 감
계	32,498	47,562	15,064
부 담 금	7,796	7,796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666	666	
그 외 수 입	12	12	
예 치 금 회 수	24,024	39,088	15,064

〈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편성 시)	변 경 (안)	증 감
계	32,498	47,562	15,064
비용자성사업비 (정책 사업)	2,050	2,600	550 (26.8%)
기금 관리비 (행정운영경비)	10	10	-
여유자금 예치 (재무 활동)	30,438	44,952	14,514 (47.7%)

3. 검토내용

- 관련 법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음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150억 6,4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에 당초 수입계획(240억 2,400만원)보다 150억 6,400만원 증액한 390억 8,8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당초 지출계획(324억 9,800만원)보다 150억 6,4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바,
 - 지출계획중 ①정책사업인 **균형발전 기반 제고**는 당초 지출계획(20억 5,000만원)보다 26.8%, 5억 5,0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서 의회의결 사안에 해당되고,
 - ②다른 정책사업인 **재무활동(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의 경우에도 당초 지출계획(304억 3,800만원)보다 47.7%, 145억 1,4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표 3-1〉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산출내역	당 초 (A)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지출합계	32,498	47,562	15,064	46.4
균형발전 기반 제고	2,050	2,600	550	26.8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 재 생 기 금)	2,050	2,600	550	26.8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1,600	2,150	550	34.4
세운5-2구역 내 공공임대상가 건립 리모델링 비용	1,600	1,600	-	-
녹지생태도심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마련 (신규)	-	550	550	-
주민역량강화	450	450	-	-
재무활동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30,438	44,952	14,514	47.7
보전지출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재생기금)	30,438	44,952	14,514	47.7
여유자금예치	30,438	44,952	14,514	47.7
행정운영경비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10	10	-	-

※ 자료근거 : ①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도시재생기금 지출계획, ②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2. 5.25) 재구성

○ 아울러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1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사업인 균형발전 기반 제고에 5억 5,000만원을 지출계획하여 **녹지생태도심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마련**을 신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 동 기금의 관련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출계획을 편성함과 운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첫째, 지출계획에 앞서 동 사업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있었으나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5월 25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 편성시 준수하여야 할 선후 절차를 역행한 편성 사례로 검토됨

- 둘째, 관련 법령 및 기준은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연도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용역기간을 설정하여 소요경비를 편성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안건을 검토하면, **녹지생태도심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이 금년 6월에 착수하여 '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확인되어 이월이 전제된 지출을 계획한 것으로 사료됨

○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와는 달리 지출계획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일시에 이월될 예산까지 편성할 필요가 없어 기금 운용부서는 향후 지출계획수립시 보다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부대의결 : 「생략」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2022. 6. 17.)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3211
----------	------

제출년월일 : 2022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상 예치금회수 금액이 당초 24,024백만원에서 39,088백만원으로 15,064백만원 증가하였음.
- 나.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신규사업 편성을 위해 사업비(정책사업)를 550백만원 증액하고, 여유자금 예치(재무활동)를 14,514백만원 증액하여,
- 다. 정책사업 2,600백만원, 재무활동 44,952백만원으로 각각 당초 편성 대비 20% 초과 변경하고자 함.
- 라. 수입·지출계획 변경 내용

〈수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편성시)	변경(안)	증감
계	32,498	47,562	15,064
부담금	7,796	7,796	
공공예금 이자수입	666	666	
그외수입	12	12	
예치금회수	24,024	39,088	15,064

〈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 (편성시)	변경(안)	증감
계	32,498	47,562	15,064
비용자성사업비 (정책사업)	2,050	2,600	550 (26.8%)
기금관리비 (행정운영경비)	10	10	-
여유자금예치 (재무활동)	30,438	44,952	14,514 (47.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정책팀 김소이 (☎2133-8614)